

#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8. 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1. 제정이유

-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,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세출로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자금출납명령관은 기반시설업무 담당과장, 자금출납원은 기반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(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의 용도에 사용)에 따른 용도에 사용토록 제한함(안 제8조).
- 바.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행위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함(안 제9조).
- 사.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,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】 제4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,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▶ 경상남도 행정과-4456(2006. 4. 12) 협조공문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타

(1)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(2)입법예고(2006. 6. 17~7. 7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##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법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기반시설부담금”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**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**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
**제4조(세입)**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

**제5조(세출)**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.

**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**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기반시설업무 담당과장, 자금출납원은 기반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**제7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** 「지방재정법」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·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, 지출원·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**제8조(부담금의 사용제한)**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건축행위의 통지 등)**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)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운영 및 관리)**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,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